

2024년 회계현안설명회 강의자료

2024년도 감사인감리 결과 등 주요 안내사항

2024. 12. 20.



금융감독원

금 용 감 독 원
(감사인감리실)

목 차

- I. 감사인감리 실시 현황
- II. 품질관리 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 III. 개별감사업무 감사절차 관련 주요 지적사례
- IV.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주요 지적사례
- V.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 강화
- VI.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TF 운영 결과
- VII.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개정 사항

I. 감사인감리 실시 현황

- '23년 14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수행하였으며, '24년 중 증선위 의결을 통해 조치 완료
 - '24년에도 14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수행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5년 중 증선위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
 - 일반적으로 Big4 회계법인은 2년 주기, 그 외 등록회계법인은 2~3년 주기로 감사인 감리를 수행

연도별 감사인감리 실시 건수

구 분*1	회계법인 수*2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 군	4	2	2	2	2	2
나 군	14	3	4	3	5	4
다 군	21	3	5	6	7	7
라 군	1	1	2	6	-	1
합 계	40	9	13	17	14	14

*1 회계법인 군 분류는 해당 연도 감리대상 선정 시 기준

*2 '24.8.31. 기준 회계법인 군 분류

II. 품질관리 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 '24년 증선위에서 조치가 의결된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건수는 9.1건
 - 가군(4대법인) 지적건수는 평균 5.5건이며, 기타 등록법인의 평균 9.8건을 하회
 - Big4의 경우 해외 대형법인과외의 제휴를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노력 및 품질지향의 조직 문화 달성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에 주로 기인
 - (구성요소별 지적사항)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평균 지적사항은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리더십책임(1.8건), 윤리적요구사항(1.5건), 업무의 수용과 유지(0.9건), 모니터링(0.7건) 順으로 많음

회계법인 분류별 · 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

(단위:건)

분류	전체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4대법인	5.5	1.0	1.0	0.5	0.5	1.5	1.0
(전체 건수)	(11)	(2)	(2)	(1)	(1)	(3)	(2)
기타 등록법인	9.8	1.9	1.7	0.9	2.0	2.6	0.7
(전체 건수)	(117)	(23)	(20)	(11)	(24)	(31)	(8)
합계	9.1	1.8	1.5	0.9	1.8	2.4	0.7
(전체 건수)	(128)	(25)	(22)	(12)	(25)	(34)	(10)

* 공개 제외된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제외

□ 품질관리 6대 요소별로 주요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 **(리더십 책임)**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 관련하여 회계법인 이사 등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자금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일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
 - 품질관리 관련 승인 및 확인 절차 수행시의 문서화가 미흡하거나, 품질관리 관련하여 중요 업무를 타부서에서 수행하거나, 품질관리담당이사의 승인 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이 미흡
 - 통합적인 자금관리 미흡, 자금 차입과 상환 관련 규정 미준수, 비감사업무 수입 및 외주비 지출 관련 통제 절차의 운영 등이 미흡
 -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품질에 근거한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 연계성이 부족 또는 평가근거 등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하거나,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상여금 외에 더 큰 규모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 우선의 보상체계 운영 미흡

-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관련 독립성 준수 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구성원 가족관계 관련 정보가 누락되는 등 정보의 완전성 확인이 미흡
 - 감사대상회사의 지배·종속회사 정보 관리가 부실하거나, 감사·비감사업무의 이해상충 확인을 위한 정보 취합의 완전성이 미흡
 - 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준수와 이해상충 여부 확인 절차가 미흡
 - 감사대상회사 관련 비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훼손 위협 등 검토 미흡 및 주식거래 완전성 확인 미흡
- **(업무의 수용과 유지)**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 위험평가 완료 전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전 위험평가표작성이 부실
 - 계약 전 위험평가 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미흡

- **(인적자원)** 과도한 업무수입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 등 점검
 - 업무수행이사 선정시 구체적인 기준 및 근거 등에 대하여 문서화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경험, 역량, 적격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 배정
 - 채용 관련 법인 전체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미흡하거나,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교육·연수 운영이 미흡
 - 감사업무시간 관리 관련 승인된 업무시간 수정시 수정사유 등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거나, 승인 권한의 업무분장이 부적절
 - 업무수행시간이 조기입력 또는 지연입력되고, 공시된 감사시간이 시스템상 승인된 감사업무 시간과 불일치
- **(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와 운영실태 및 감사조서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 감사대상 기업 및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위험평가 등의 문서화가 충실하지 않은 등 충실한 감독 및 검토가 미흡
 - 업무수행이사의 충실한 지시, 감독, 검토를 위한 필요 감사업무시간 등 규정 미준수

-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경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등 적격성이 미흡하거나, 사전심리 시간이 내부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등 품질관리검토 통제절차가 미흡
- 사전심리담당자의 검토사항 등을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로만 문서화하여 구체적인 사전심리 내용 확인이 어려움
- 감사보고서일 이후 60일을 경과하여 감사조서가 취합되는 등 감사조서 관리가 미흡하거나, 조서의 임의변형 방지 절차 미흡
- **(모니터링)**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사후심리)의 적정성 점검
 - 감사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보 보안통제 구축·운영 미흡
 - 사후심리시간 관리 또는 사후심리 수행 내역의 문서화 등이 미흡하고,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실제 보완 및 개선 이행 여부 확인 등이 미흡
- ☞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후, 「업무자료 - 회계 -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 회계법인 제재정보 등 - 감사인감리 개선권고사항」 메뉴 참조

Ⅲ. 개별감사업무 감사절차 관련 주요 지적사례

- '24년 증선위에서 조치가 의결된 개별감사업무 지적사항은 46사 255건으로, 지적회사당 평균 지적건수는 5.5건
 - Big4의 지적회사당 평균 지적건수는 1.9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 6.3건에 비해 낮은 수준
- 감사업무 단계별 지적 건수는 감사증거의 수집과 문서화 단계(107건, 지적회사당 평균 2.3건), 감사 계획 단계(87건, 지적회사당 평균 1.9건), 기타 단계(61건, 지적회사당 평균 1.3건) 順으로 많음
 - (감사계획 단계)
 - 부정 위험평가, 경영진에 의한 통제 무력화 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소홀 또는 문서화 미흡
 - 중요성 기준 결정 관련 절차 소홀 또는 문서화 미흡
 - 감사 전 재무제표 관련 감사절차 소홀 또는 문서화 미흡
 - 독립성 준수 확인절차 미흡
 - 감사위험평가 및 감사전략 수립절차 등 관련 문서화 미흡
 - 재무보고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감사절차 문서화 미흡

○ **(감사증거의 수집과 문서화 단계)**

- 매출 및 매입, 매출원가,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또는 문서화 미흡
- 외부조회 관련 감사절차 문서화 미흡
- 표본감사절차 문서화 미흡
- 종속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또는 문서화 미흡
-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또는 문서화 미흡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문서화 미흡
- 부외부채 테스트 관련 문서화 미흡

○ **(감사종결)**

- 감사조서 문서화 및 최종 취합 미흡
- 감사 종결단계의 분석적 절차 미흡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미흡
-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감사절차 문서화 미흡

○ **(기타)**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또는 문서화 미흡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소홀 또는 문서화 미흡

IV.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주요 지적사례

- '24년 증선위에서 조치가 의결된 등록요건(외감규정 별표1) 유지의무 위반사항은 11개 등록요건에서 법인별로 1~8건 발견
 - 등록요건별 위반사항은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2-다), 통합관리체계(2-가), 감사조서(2-바)·보상체계(4-가) 등 順으로 많음

(2-가)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1) 자금관리

- 용역비 집행 관련하여 용역의뢰의 필요성, 용역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용역 수행 여부 등에 대한 법인 차원의 실질적인 확인없이 비용을 집행
- 각 사업부에서 자금 대여, 법인비용 청구,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사업부의 비용지출 규모를 각 이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사용하도록 함

(2) 감사업무 수임관리

- 계약 전 위험평가의 판단기준 없이 담당이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거나, 판단근거를 미기재 또는 부실 기재하였음에도 법인 차원의 검토 미흡
- 품질관리실 승인 전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통제 미흡

(3) 인사관리

- 각 본부에서 내규에 따른 법인 차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규 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급여 등)을 결정
- 이사 승진시 업무품질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정책과 절차가 미비

(4) 기타

- 사용인감 날인 내역 기록 및 미사용 인감의 회수 또는 폐기 등 인장관리 미흡
- 품질관리 절차 등 관련 중요한 내부 승인·확인을 이메일을 통해 수행하나, 이메일이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되어 내부통제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2-다) 독립성 유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독립성 유지 여부를 점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정보의 수집관리 미흡

- ◆ 독립성준수확인서에서 일자 누락, 서명 미비 등의 사례 발견
- ◆ 주식거래 입력 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하거나 미입력한 사례 발견
- ◆ 감사대상회사의 지배·종속회사 및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가 미흡
- ◆ ERP상 독립성확인서 제출 이후 임의 수정이 가능하여 입력정보의 정확성 확인이 미흡
- ◆ 신규사원 입사 또는 내부 사원승진시, 사원예정자 본인 및 배우자의 독립성 관련 정보 미확인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입 관련 독립성 확인절차 미흡

-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일부는 품질관리실이 검토하지 않아 담당이사 등의 임의적인 업무 구분에 따라 독립성 점검이 누락될 소지가 있거나, 품질관리실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확인 미흡
- ◆ 독립성 확인 완료 전 비감사업무 계약을 먼저 체결하거나, ERP상 별도 계약관리를 하지 않은 사례 발견
-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 전 회사의 감사 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견

(2-마) 감사업무 투입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감사업무시간의 미승인, 지연입력·승인, 자동승인, 사후입력 등 감사업무시간 입력 및 승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미흡
- 감사업무시간 승인후 수정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거나, 입력·승인한 감사업무시간의 합리성 및 완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미흡

(2-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진본성 등이 보장되는 체계 구축

- 감사조서 취합 지연·일부 누락, 조서관리대장에 세부정보(보관장소, 박스번호, 폐기여부 등) 누락, 서면 조서 입고기록 누락, 임의수정 방지 통제 미흡 등 감사조서의 취합·관리 미흡
- 각 본부별로 보서 보관, 폐기대상 조서 및 외부참고 이관 대상 조서 혼재 등 조서관리 미흡

(4-가) 감사업무 수행 이사의 성과평가지표* 비중 70% 이상

○ 감사품질관련 요소를 70% 반영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평가결과와 연계된 보상체계 운영 미흡

- ◆ 감사업무 수행이사 일부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누락하거나, 평가점수가 동일함에도 성과등급이 다르거나, 성과등급이 동일함에도 상여금 지급률이 상이한 사례 발견
- ◆ 성과급이 전년도 수임실적 등에 연계된 기본급의 상한에 연계되어 있어, 수임실적이 감사업무 품질평가 결과보다 보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기본급 및 성과평가 등급이 동일함에도 실제 성과급 지급률이 다른 사례 발견
- ◆ 이사별로 품질평가지표의 평가 방법을 달리 적용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일 성과평가 등급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
- ◆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과 실제 성과급 지급률이 불일치한 사례가 발견

○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평가상여금 외에 더 큰 규모의 특별 상여금을 각 팀(본부)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 품질지표를 반영한 성과평가 결과 성과급 외에 더 큰 규모의 상여금·성과급을 구체적인 기준·근거 없이 각 팀에서 결정하거나 수임 실적에 따라 지급
- ◆ 품질지표를 반영한 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전체 보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
- ◆ 내규 상 기준연봉표와 무관하게 이사의 연봉(기본급)을 정하고, 대규모의 야근수당을 기준없이 지급

V.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 강화

- '23년 감사인감리 과정에서 다수 중소기업 회계법인에서 소속 회계사 및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부당한 자금집행 등 사례 발견
 - ☞ 보도자료(24.2.14.) :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발견」
 - (유형1)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
 - (유형2)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등 비용을 부당 지급
 - (유형3) 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부업법상 금리 제한을 회피하려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
 - (유형4)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년 지급
- 등록요건은 회계법인 내 인사,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
 - ⇒ 채용과 자금 집행 등은 개별 감사팀 또는 회계사가 아닌 회계법인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 통제하에 수행하고, 개인이 회계법인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통제 강화 필요

VI.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운영 결과

□ 금감원은 회계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3.11월부터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를 운영하여 다양한 감독이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 **보도자료('24.9.24.)** :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 (디지털 감사 활용 근거 및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근거 및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절차를 명확화
- 신뢰성 검증 및 데이터 보안 관련 실무지침, FAQ 등 디지털 감사 실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 (회계법인간 격차 완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추진,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에 대한 접근성 및 관심도를 제고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시 IT 교육실적 반영,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과정 확대·개편 등 추진

○ (피감사기업 등 인식 제고)

- 인식 제고 및 관심 확대 유도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의 기업 대상 정기 설명회·세미나 등에서 디지털 감사를 소개하고 디지털 감사 활용 사례 등을 작성·배포
- 디지털 감사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감사 활용 사항을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감사 데이터 표준화)

-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디지털 감사기술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

*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회계법인, 기업측(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인공지능(AI) 기술발달, 회계와 IT기술의 융합 등으로 기업의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디지털 감사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경우 감사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회계법인에서 디지털 감사 도입 및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VII.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개정 사항

- 「외부감사법」에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2차례('21·'22사업연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23사업연도 평가를 진행 중
- 평가방법의 합리성과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 그간 회계법인 간담회, 디지털 감사 TF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을 개정('24사업연도 평가시 적용 예정)
 - **(사전심리 담당자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산정기준 합리화)**
 - **(현행기준)** '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계량지표5-①, 배점 3점) 평가시 사전심리 시간은 피감사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전 투입한 시간으로 집계
 - ⇒ **(개정안)** 사전심리담당자의 입증감사 전 검토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 입력내역의 신뢰성이 높은 경우 산정기준을 입증감사 이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감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현행기준)**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계량지표4-①, 배점 3점) 평가시 회계사 1인당 평균 연수시간 및 의무연수 미이수자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연수시간 산정시 과목별 가산은 없음
 - ⇒ **(개정안)** 교육훈련 항목평가를 위한 연수시간 산정시 IT 관련 연수 이수시간*에 50% 가산

* 한공회 표준연수기준 대분류상 '정보기술'로 분류된 연수과목